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부가금 부과결의 요구사유에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767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징계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12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1호 중 “날”을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것”을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112조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5항 중 “법 제37조의2제3항”을 “법 제3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2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심의대상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별	제112조(징계부가금)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징계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

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법 제37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
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
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
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
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
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
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

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시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
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
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
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
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
에 징계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
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
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을 안 경우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

-----.

1. -----

----- 날 또는 환수금이
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

2. -----

-----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

⑤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3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사단, 전단, 비행단 및 그와 같은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

⑥ -----

----- 제3항 또는 제5항-----

-----.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7조의2제4항-----

급을 말한다.

<신 설>

-----.

제116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

분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

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

자에게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

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

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818